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11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신성범 · 조은희 · 서천호
김위상 · 최수진 · 송석준
김예지 · 안철수 · 박덕흠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280만 명에 달하여 국내 인구에서 상주 외국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시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 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등을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농어촌주민(이하 “외국인 농어촌주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국인 농어촌주민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농어촌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u>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 ----- <u>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등을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u> ----- -----.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u>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농어촌주민(이하 “외국인 농어촌주민”이라 한다)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u>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u>제17조의2(외국인 농어촌주민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u>

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농어
촌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함께 제
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